1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O 제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O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O 상정일자 : 제2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년 2월 8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 제안이유

O 교육부의 2023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라 배정한 국가정책수요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O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86명"에서 "2,899명으로 13명 증원(일반직 11명, 교육전문직 2명)
- O 인공지능(AI) 교육 기반 조성, 미래형 교육협력 체제 구축,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 등 국가 교육정책 사업 인력 반영

3. 검토보고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노인만)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책수요 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교육부에서 통보한 2023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O 주요 내용으로는

- ▶ 안 제2조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86명"에서 "2,899명"으로 13명 증원하고,
- ▶ 안 별표3에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2,577명"에서 "2,588명"으로 11명 증원하고, 특정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정원을 "236명"에서 "238명"으로 2명 증원함

[정원 조정 내역]

구 분	변경 전 (A)	변경 후 (B)	중감 (C=B-A)	비고
일반직(5급 이하)	2,577명	2,588명	11명	아 별표3
특정직(5급 상당 이하)	236명	238명	2명	1 包ェン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²⁹⁾에 따라 교육부에서 통보된

^{29)「}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3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인력 증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음

- ▶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인공지능(AI) 교육 기반 조성', 대구미래학교(구, 행복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교육 협력 체제 구축',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교육(늘봄학교)'등 국가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 증원은 필수적이라 사료됨
- ▶ 다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미래사회 창의융합형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취약지역 학교의교육력 강화을 위한 대구미래학교* 운영 내실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 2011년부터 교육취약지역 및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 행복학교를 2020년 미래역량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 대구미래학교로 전환
- ▶ 또한, '늘봄학교'의 단계적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미래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0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	○ 지방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이 160명
	배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정도 부족한 상태임
	현원 배치 시 사업수요에 맞게 필요	○ 향후, 정원 배정에 따른 현원 배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시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노력해 주시기 바람	있도록 인력 운용에 만전을 기하
		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O 없 음

6. 수정안요지

O 없 음

7. 심사결과

O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요지

O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O 없 음